

D Y N A M I C  
K O R E A

• 발행처: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 발행일: 2006년 1월

•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번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Tel: 02) 3480-7930

Fax: 02) 3496-5133

Tel: 02) 958-4720

Fax: 02) 958-4688



기획예산처  
MINISTRY OF PLANNING & BUDGET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 CONTENTS

## I.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 5
-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필요성 ..... 13
-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 16
-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 18

## II. BTO 민간투자사업



- 1. BTO 정부고시사업의 절차 ..... 25
- 2. BTO 민간제안사업의 절차 ..... 28
- 3. 주요항목별 평가기준 ..... 31

## III. BTL 민간투자사업



- 1.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요 ..... 33
- 2. BTL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 34
- 3. 주요항목별 평가기준 ..... 37

## IV.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및 정부지원제도



-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 39
- 2.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원방식 ..... 47

# I.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인천공항고속도로

##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 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1)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 35개 시설과 2005년도에 신규 도입된 학교, 군주거, 노인주거복지, 공공보건의료, 문화시설 등 9개 시설을 합한 총 44개 시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학교



군주거



문화/복지



일반철도

경전철

철도



하수관거

하수처리  
소각시설

환경

## 2)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1)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교육, 국방, 주택, 보건복지, 산림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야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로 (3)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교통체계
철도 (3)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 (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 (1)	공항시설
수자원(3)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에너지(3)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경 (5)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통 (3)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9)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교육(1)	학교시설
국방(1)	군주거시설
주택(1)	공공임대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 공공보건의료
산림(2)	자연휴양림, 수목원

(2)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효용

-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목표공기 준수로 사업편익의 조기 향유 가능
- 협약상 확정된 총사업비내 사업완료로 재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사업비 증액 관행 차단 가능
-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운영을 일괄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품질·안전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가능

(3) 분야별로 사회기반시설 효용과 추진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시설분야

· 효용:

- 도로시설의 부족, 교통정체구간의 확대로 물류비의 증가를 해결할 필요
- 도로시설과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
- 지역개발사업의 지원효과에 기여

· 추진사례: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구간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사업규모	연장 40.2km
총투자비	14,602억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 '95. 11 ~ '00. 12 운영기간 : '01. ~ '30. (30년간)



- 철도시설분야

· 효용:

- 일반철도는 한계용량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수송체계의 구축이 필요
- 경전철의 확충으로 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여객수송이 가능

· 추진사례: 인천공항철도

사업구간	인천국제공항 ~ 서울역
사업규모	연장 61.5km
총투자비	46,354억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 '01. 4. ~ '07. 3 (1단계) '01. 4. ~ '09. 12 (2단계) 운영기간 : 2단계 준공후 30년간



- 항만시설분야

- 효용:
  - 체선, 체화현상 등 만성적인 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할 필요
  - 주변국 주요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
- 추진사례: 부산신항만 1단계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진해시 용원동 일원
사업규모	부두접안시설 9선석, 배후부지 93만평
총투자비	23,886억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 '01. 11 ~ '09. 5 운영기간 : 50년간



- 교육시설분야

- 효용:
  -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 주민편의시설 조기확보, 시설상호간 활용도 극대화
- 추진사례: 초등학교 BTL 복합시설(여시)
- 대지면적 : 16,132.30 M<sup>2</sup> ◦ 연면적 : 14,570.51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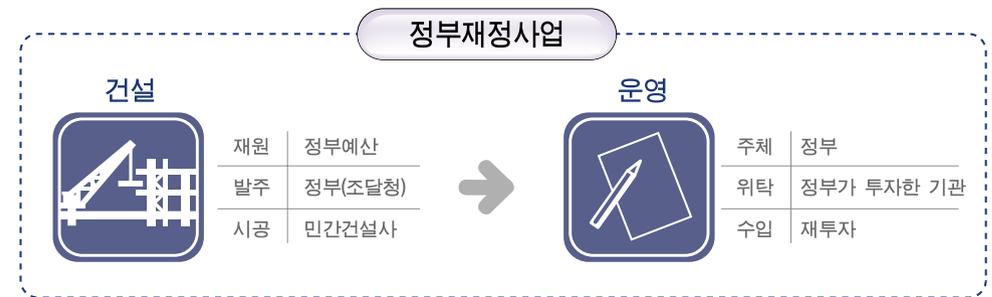


### 3)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점입니다.

(1)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의 주체가 민간입니다.

-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에서 건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주로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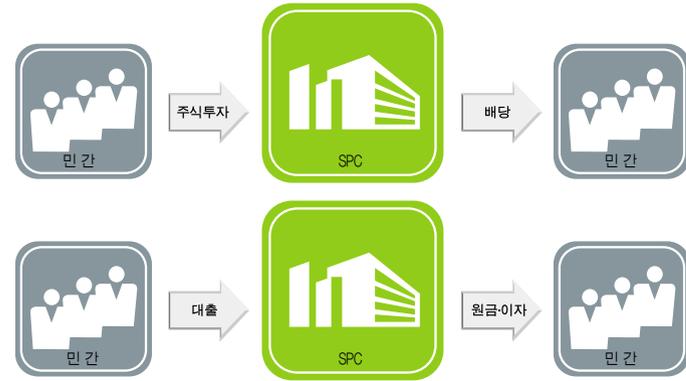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됩니다.

- 민간투자사업법인은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시행법인입니다.
- 민간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수입(정부임대료 포함)으로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 민간은 특수목적회사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운영기간 중의 운영수입으로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금·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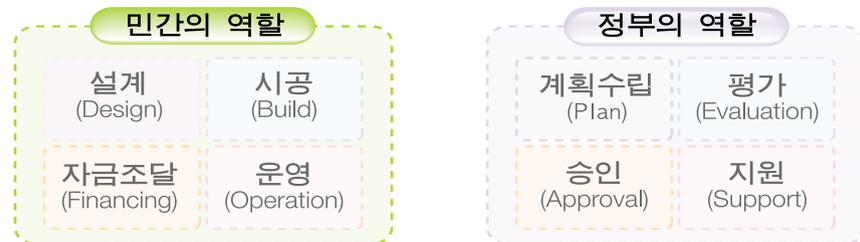
#### 4)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 (1) 민간의 역할

-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를 담당합니다.(Design)
- 정부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를 수행합니다.(Build)
- 사업에 필요한 자금(자본금, 차입금)을 조달합니다.(Financing)
- 정부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을 운영합니다.(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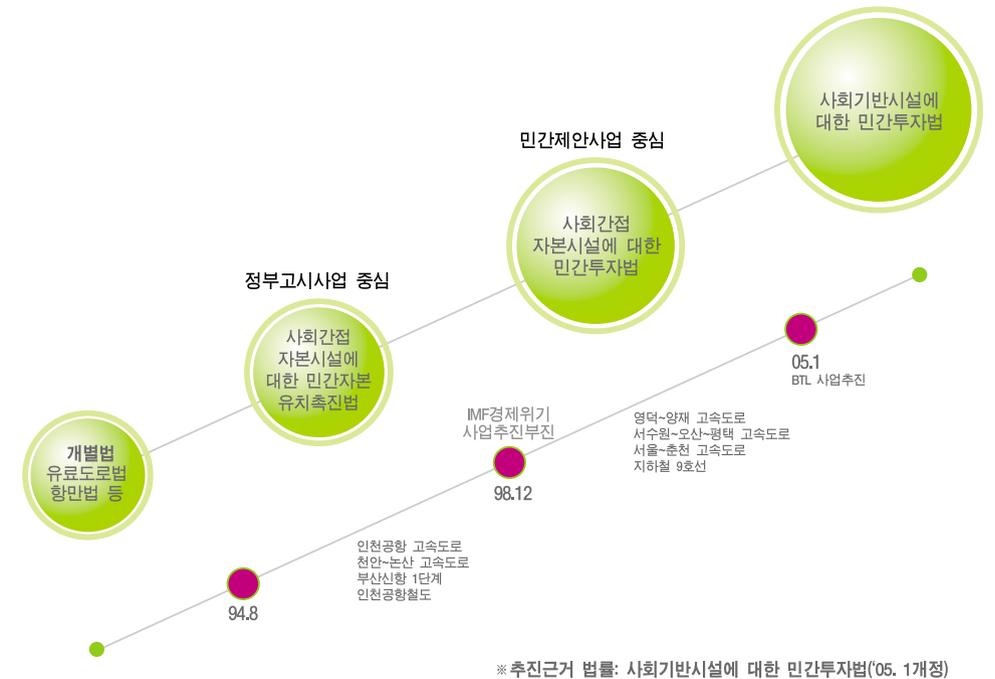
##### (2) 정부의 역할

-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Plan)
- 민간의 사업계획을 평가합니다.(Evaluation)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을 승인합니다.(Approval)
- 민간의 사업수행을 지원합니다.(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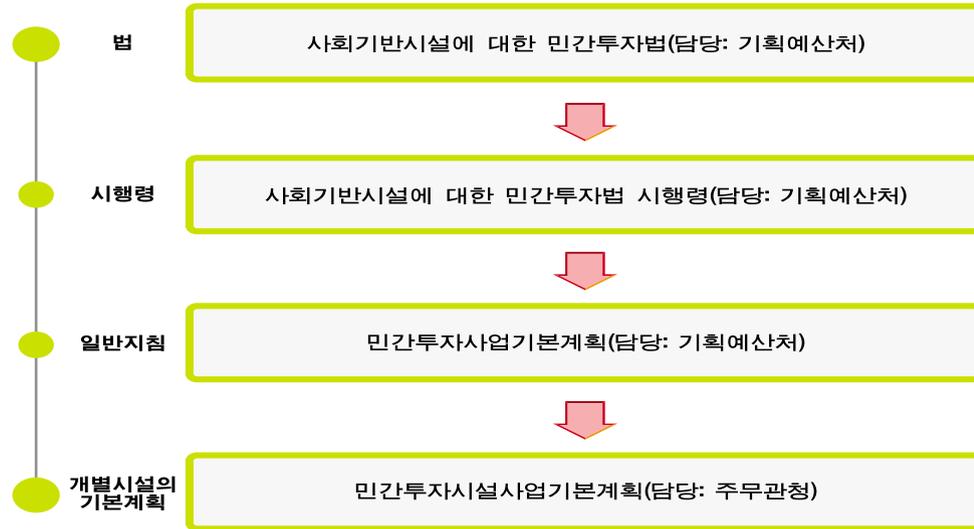
#### 5)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1) 민간투자법은 이렇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 1994년 8월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운영수입보장 등 사업위험 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투자대상시설, 사업시행방식, 투자자원조달방식 등이 다양화되었습니다.

(2) 민간투자법 체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 및 절차
-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을 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필요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맞춰가기에는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민간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부 예산의 분야별 배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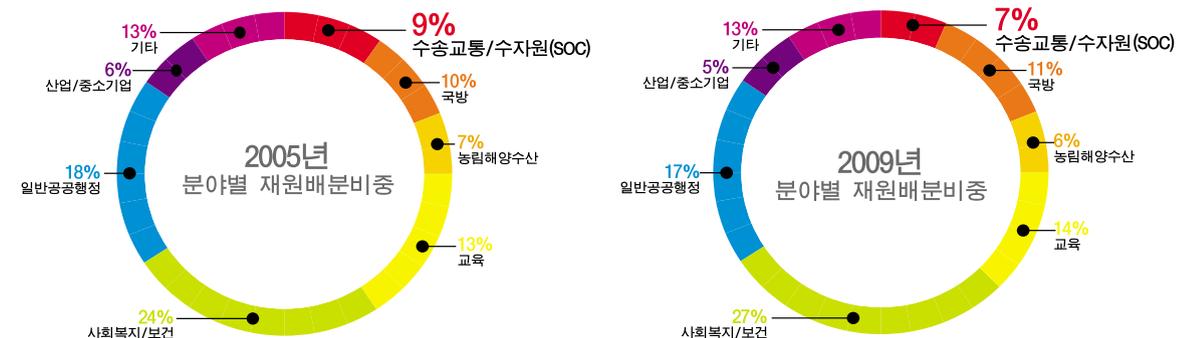
- 그동안 경제성장에 역점을 둔 결과, SOC·농어촌산업 및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에 복지 및 삶의질 분야의 지출비중은 낮은 구조입니다.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 분	미 국 ('03)	캐나다 ('03)	스웨덴 ('02)	독 일 ('03)	호 주 ('03)	OECD 15개국평균	한 국 ('04)
국 방	19.1	5.8	5.7	3.7	6.5	4.8	11.6
경제사업	7.0	6.0	9.4	6.7	6.2	8.8	23.1
복지및삶의질	57.7	52.7	51.9	75.1	50.5	55.4	23.4
교육	2.6	2.1	6.4	0.4	9.3	8.1	15.8
기 타	13.6	33.4	26.6	14.1	27.5	22.9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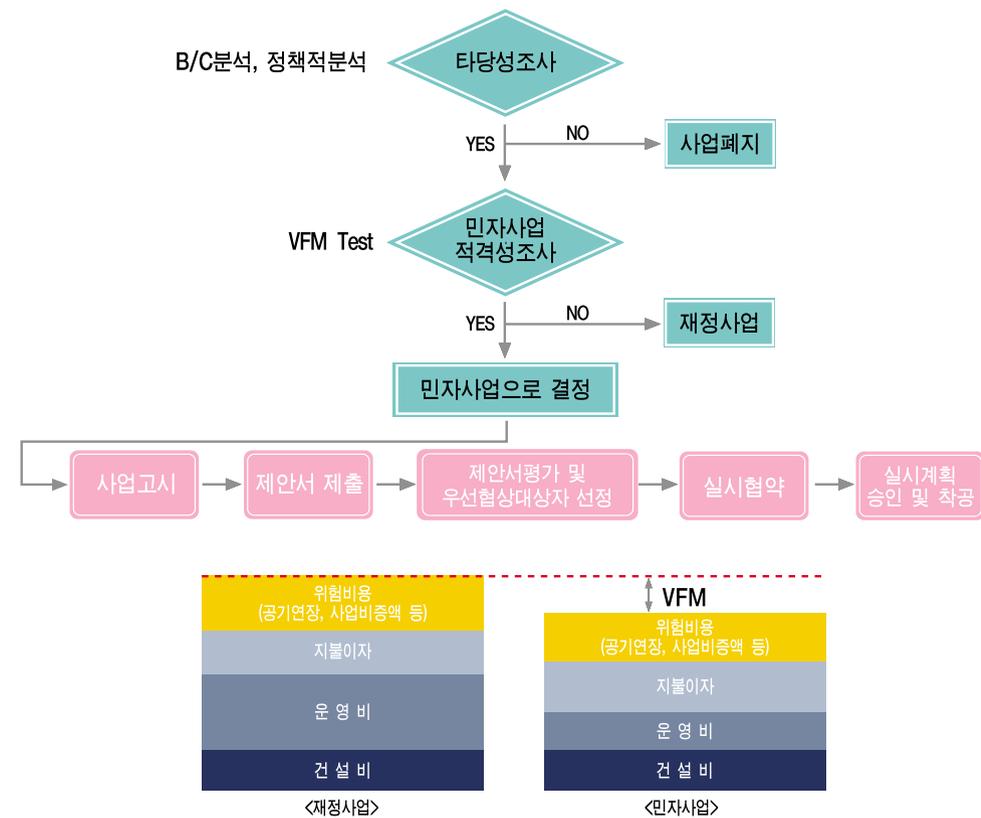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04)

- 그러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에 따라 복지 및 삶의질 분야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OC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에서의 투자비중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 2)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

- 민간투자는 SOC투자를 위한 정부예산의 부족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민간이 설계-건설-자금-운영-유지관리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비용절감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VFM Test)과정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VFM(Value For Money)는 비용-편익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값(VFM > 0 → 민자사업, VFM < 0 → 재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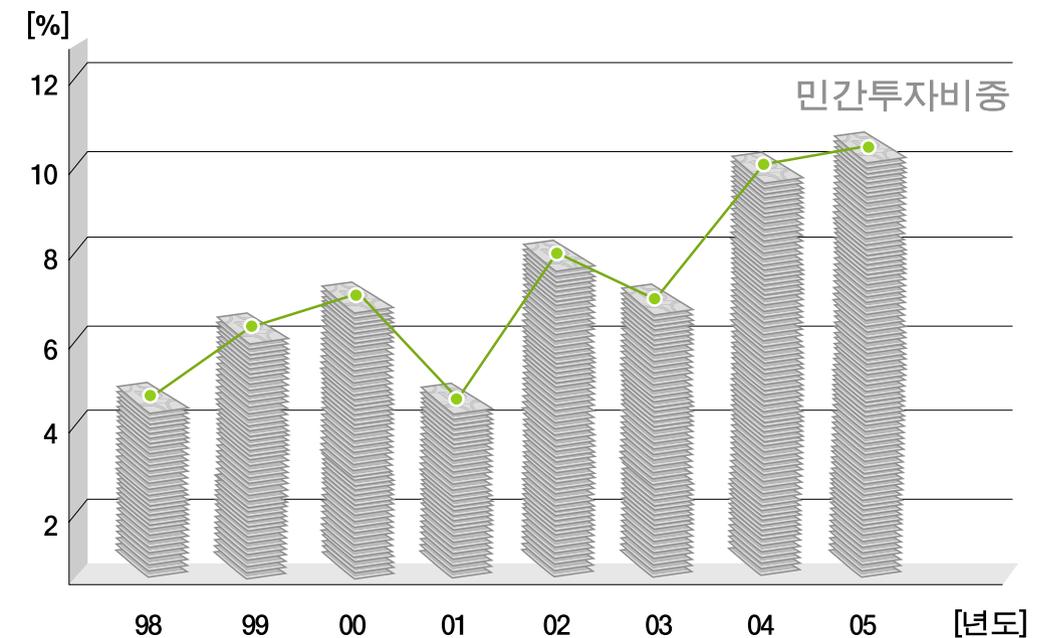
## 3)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

- SOC 분야에서의 민간투자의 비율은 1998년 4.5%에서 2005년 10.1%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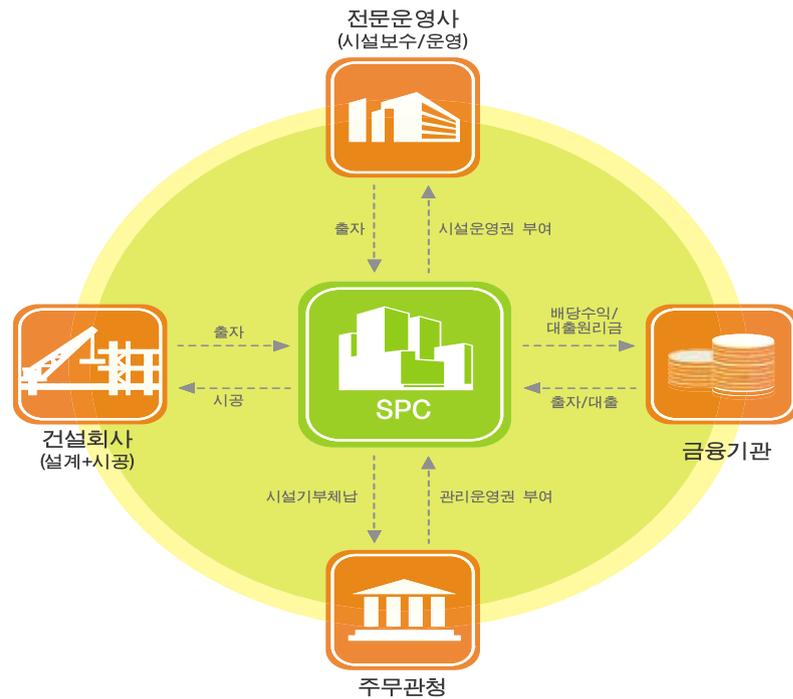
	'98	'99	'00	'01	'02	'03	'04	'05
전체 SOC 투자	11.7	14.0	14.7	15.0	16.1	18.0	17.4	17.8
- 재정투자	11.2	13.1	13.7	14.4	14.9	16.8	15.7	16.0
- 민간투자	0.5	0.8	1.0	0.6	1.2	1.2	1.7	1.8
민간투자비중	4.5	5.8	6.7	4.1	7.7	6.8	9.8	10.1

※ '01년 민간투자는 신공항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일시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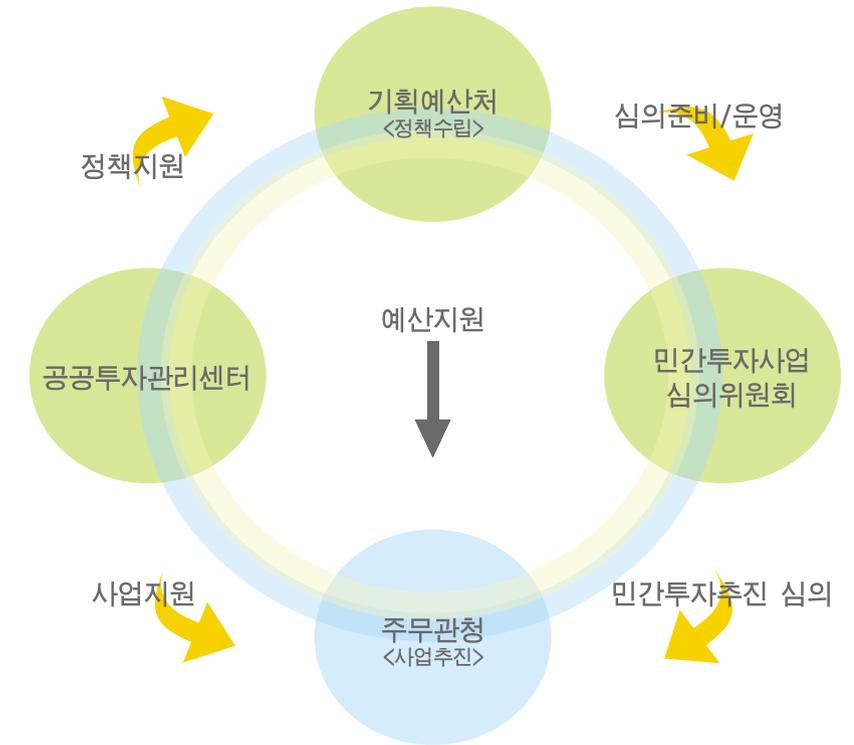
###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 1) 민간측에서는 건설회사, 금융기관, 전문운영사, 설계사, 컨설팅기관 등이 참여



- 건설회사
  - 사업의 초기비용을 부담하고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분참여
  - 해당시설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담당
- 금융기관
  - 배당을 목적으로하는 지분참여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대출참여의 방식으로 참여
- 전문운영사
  -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
- 설계사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도서의 작성

#### 2) 정부측에서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주무관청,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추진 또는 지원



- 기획예산처
  - 민간투자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수립
  - 각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민간투자 주요정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주무관청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까지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직접 추진
- 공공투자관리센터
  -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 1) BTO 사업방식과 BTL 사업방식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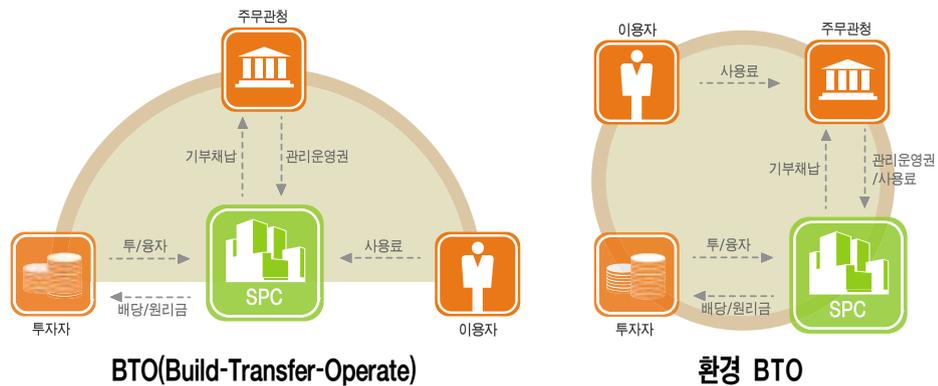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구조에 따라, 주로 『BTO방식』, 『BTL방식』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의 방식들(BOT, BOO 등)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준공시소유권	관리운영권	시설운영
BTO(건설-이전-운영, Build-Transfer-Operat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BTL(건설-이전-임대, Build-Transfer-Leas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핵심적 공공기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예시: 학교의 교육, 미술관의 전시기획업무 등)

## 2) BTO 사업방식

- BTO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도로, 철도 등 일반적인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 환경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이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BTO 사업은 사업의 제안주체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됩니다.

유형	특징
정부고시사업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민간제안사업	민간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요청하는 방식

- 주무관청이 수립·고시하게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민간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민간의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li> <li>· 사업의 예정지역·규모</li> <li>·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수익</li> <li>·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li> <li>· 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li> <li>· 대상사업 시설의 관리 및 운영</li> <li>·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내역·자금조달계획</li> <li>·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li> <li>·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li> <li>· 무상사용기간 등 산정내역</li> <li>· 정부지원 요구내용</li> <li>· 시설의 관리운영계획</li> <li>· 부대사업의 내용·사유(추진시)</li> <li>· 기타 필요한 사항</li> </ul>

- BTO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는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서 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항만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며 그 밖에 기타시설이 포함됩니다.

###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전의 종전시설: 35개

도로,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 도서관

### 3) BTL 사업방식

- 2005년 새로 도입된 BTL 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 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습니다.
  - 시설임대료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는 사업위험도·자금조달비용 등이 감안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분할·지급
  - 운영비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초로 정부가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여 조정·지급



- BTL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설로는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로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과 환경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05년 1월 1일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시설: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 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BTL 사업은 정부고시사업에 의해 추진이 가능하며, 주무관청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
  -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 BTL 사업의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복지시설의 조기확충
  - 시중여유자금을 생산적 공공투자로 전환 → 경제의 선순환 유도
  - 민간의 자금·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4) BTO방식과 BTL방식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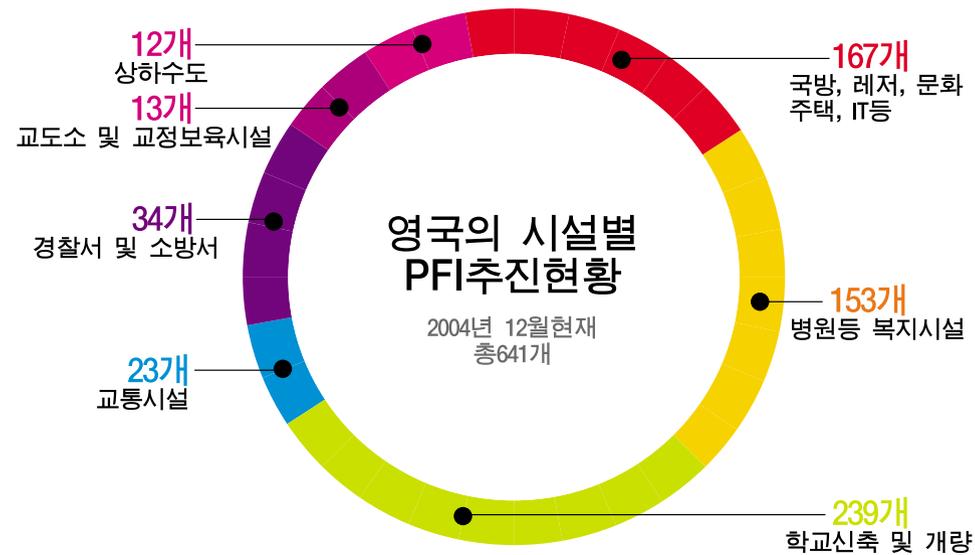


추진 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대상시설 및 성격	·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고속도로, 항만, 경전철, 지하철, 환경시설 등)	·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학교, 복지, 일반철도 등)
투자비 회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사업 리스크	· 사업위험이 높음 · 높은 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목표수익률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운영수입 변동위험	· 사업위험이 낮음 · 낮은 위험에 상응하는 낮은 수익률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운영수입 확정
사용료 산정	· 총사업비 기준 (고시·협약체결시점 가격) · 기준사용료 산정후, 물가변동분을 별도 반영	· 총민간투자비 기준 (시설의 준공시점 가격) · 임대료 산정후 균등 분할하여 지급
재정 지원	·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 학교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시설에 재정지원 없음 · 예외적으로 장기임대료 축소를 위해 주무관청이 필요시 재정지원

## 5) 해외의 사례

### (1) 영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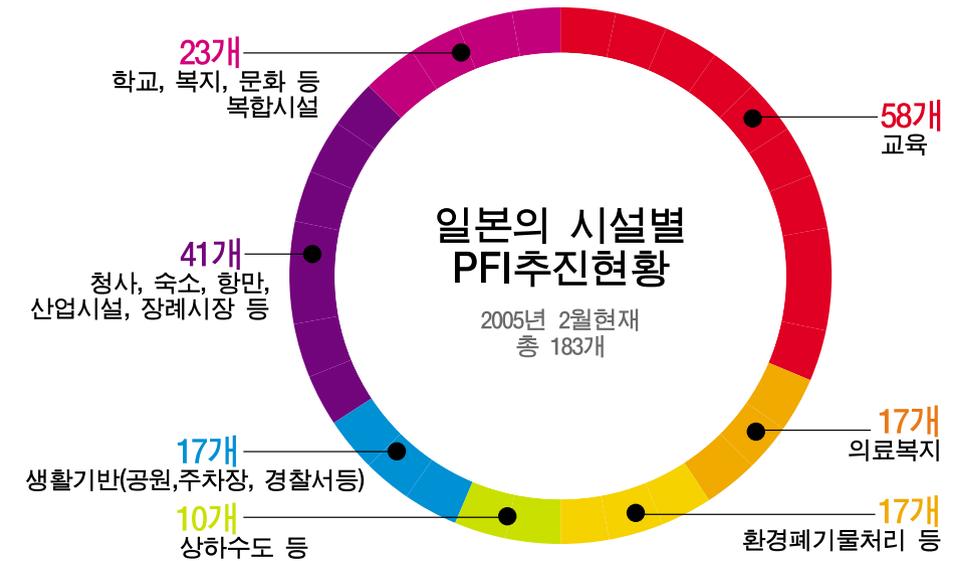
- 영국에는 1992년에 도입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가 있습니다.
- 사업의 전 과정(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등)을 민간이 책임
- 정부는 시설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BTL 방식과 비슷
- 영국의 민자사업의 대상시설은 병원, 학교, 교도소, 법원, 국방 분야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 시사점
- 정부와 민간사이의 Partnership 강조
- 민간에의 위험 이전을 통한 VFM 창출 및 효율적 사업 관리
- 철저한 서비스성과(Output) 중심
- 사업대상의 다양화
- 정부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2) 일본의 사례

- 일본은 1999년에 공공 부문의 재정개혁 수단으로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정비법 (PFI법)'을 제정함으로써 영국의 PFI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사업비 절감 및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문화, 학교, 복지 관련시설이 어우러진 형태의 복합화 방식



- 시사점
- 시설 운영업무의 비중이 큰 복잡한 사업에 대해서 PFI방식이 유효
- 운영부분을 민간에게 위임-저렴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 사업의 생애비용(LCC:Life Cycle Cost)의 저감
- 지역기업의 발전,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1. BTO 정부고시사업의 절차

BTO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제반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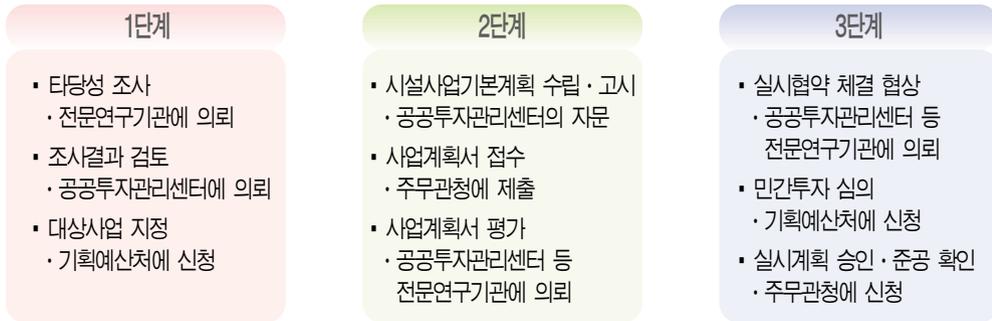


- 주무관청(주무부처)이 대상사업을 지정함으로써 주요 3단계 8개 Step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1단계는 대상사업 지정, 2단계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평가, 마지막 3단계는 협상 및 공사시행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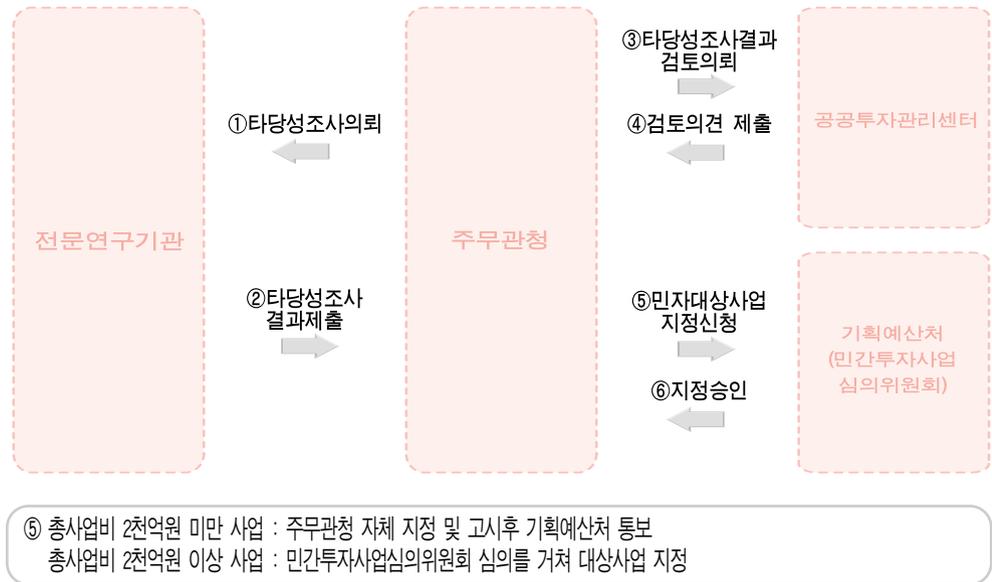


## II. BTO 민간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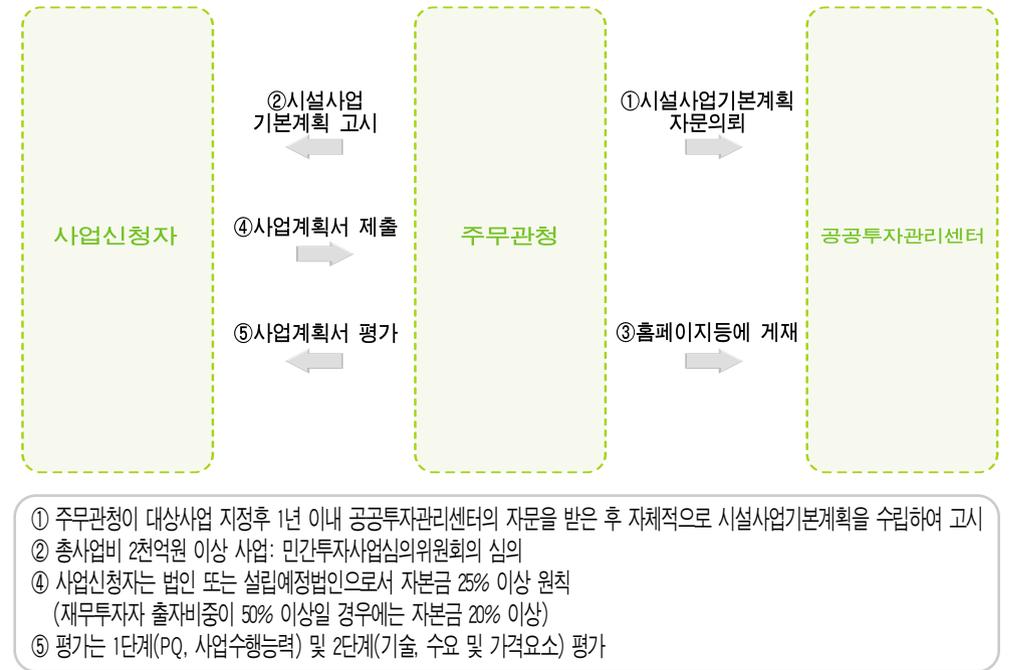
■ 추진단계별로 아래의 절차·기관을 거쳐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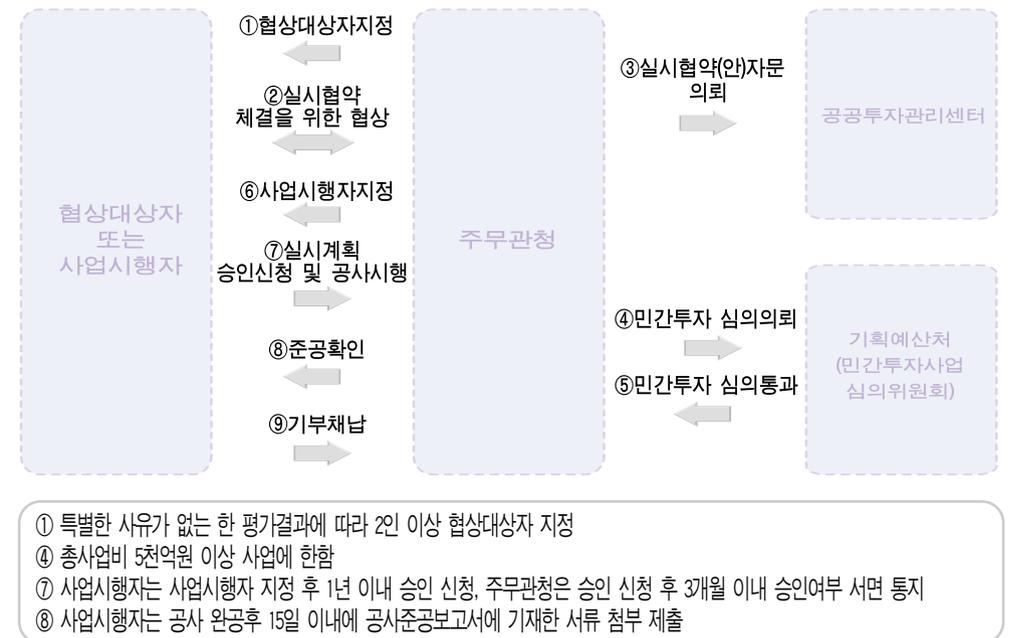
■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1단계 『대상사업 지정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2단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평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3단계 『협상 및 공사시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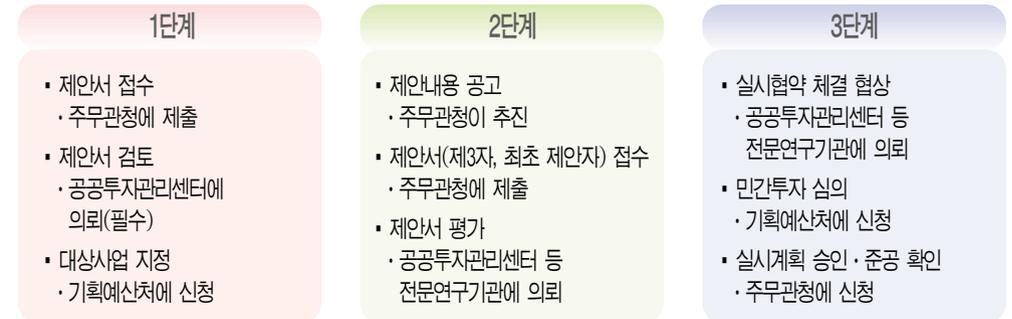
## 2. BTO 민간제안사업의 절차

BTO 민간제안사업은 민간부문(사업제안자)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주무관청이 검토·평가한 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한 후,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제반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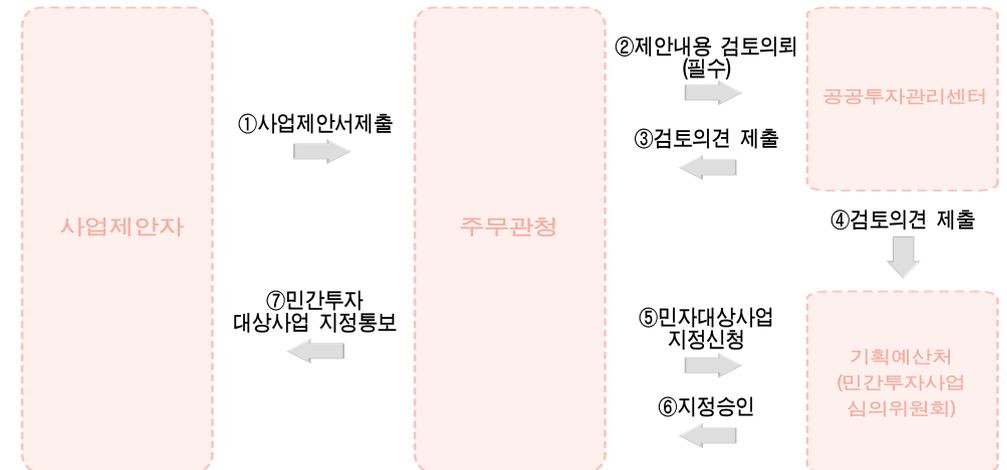
- 사업제안서의 접수·검토를 시작으로 주요 3단계 8개 Step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1단계는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 2단계는 제안내용 공고 및 평가, 마지막 3단계는 협상 및 공사시행 단계입니다.



- 추진단계별로 아래의 절차·기관을 거쳐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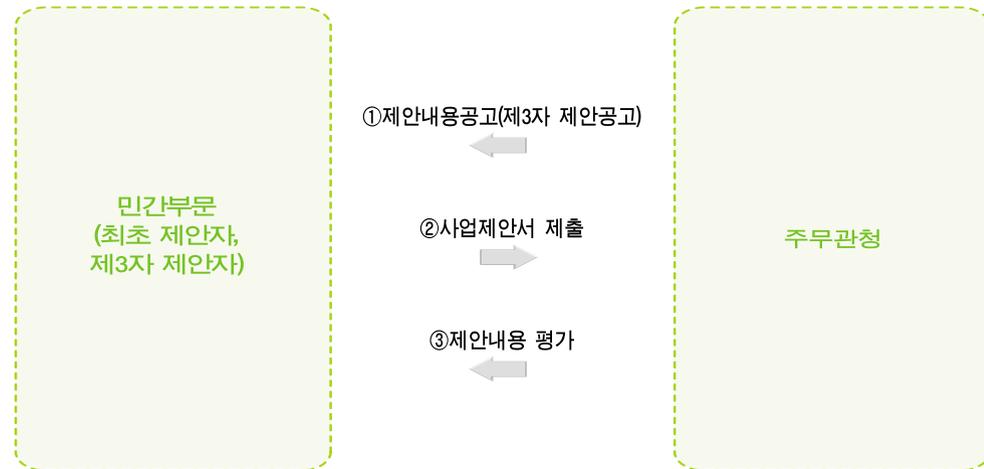


- 1단계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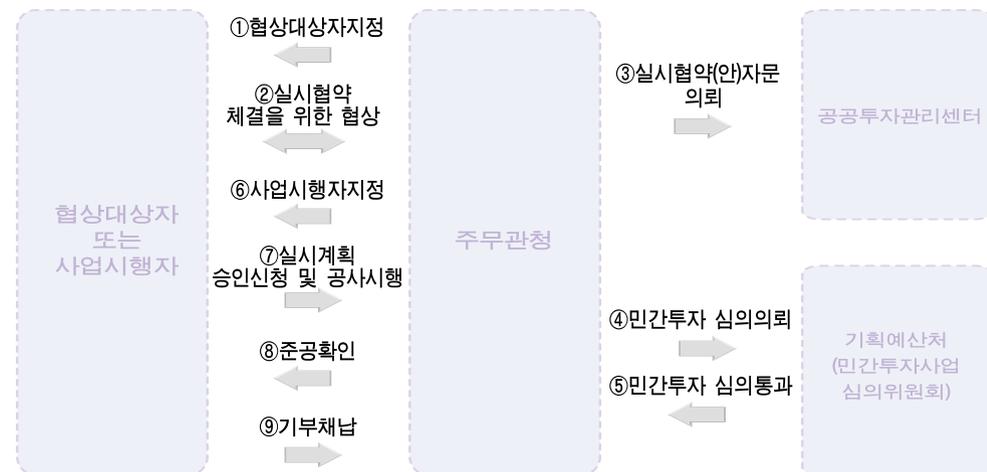
- ① 최초 제안내용을 제안내용 공고전까지 수정 또는 보완 불가(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주무관청 등이 요구하는 경우 제외)/ 제안내용 공고일까지 제3자 제안서 접수 불가
  - ② 주무관청의 정책 및 실적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의뢰
  - ③, ④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에 검토 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에 검토의견 제출
  -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백억원 이상) 요청전에 필요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적격성 조사)
-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 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
  - VFM 분석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
  - 정부입장에서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정부실행대안 제시

■ 2단계 『제안내용 공고 및 평가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① 공고기간 90일 이상, 총평가점수의 10% 범위 안에서 최초제안자 우대 가능(공고 이후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시 5% 범위 내에서 우대 가능)
- ③ 사업계획평가단 구성 및 운영/2단계 평가(1단계:PQ, 사업수행능력, 2단계:기술, 수요 및 가격요소)/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우대 가능

■ 3단계 『협상 및 공사시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협상대상자 지정
- ④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사업에 한함
-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1년 이내 승인 신청, 주무관청은 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 승인여부 서면 통지
- ⑧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에 기재한 서류 첨부 제출

### 3. 주요항목별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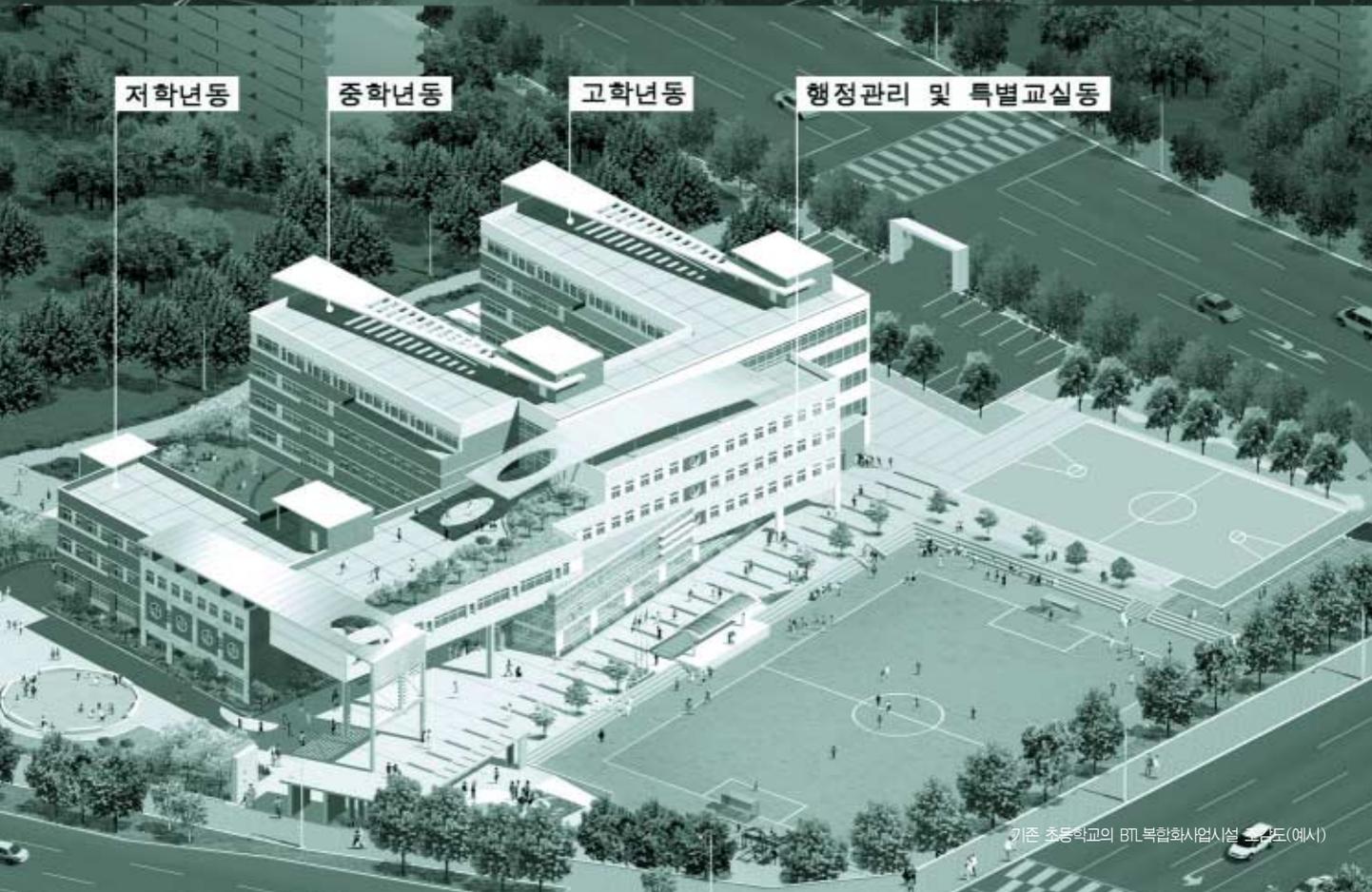
- 2단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건설계획 (200점 ~ 250점)	- 설계의 적정성 -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비 등 비용산정의 적정성 - 기타 필요한 사항
사업관리 운영계획 (200점 ~ 250점)	- 시설유지관리계획 - 운영계획 - 운영비 산정과정의 적정성 - 전문운영사 출자 - 민자사업 참여경험 - 기타 필요한 사항
수요분야 (150점)	- 수요 추정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 추정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가격분야 재정지원 요구금액 (300점 ~ 350점)	- 재정지원 요구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 - 재정지원 요구금액을 가장 적게 제시한 사업신청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율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
가격분야 운영수입보장 요구금액(100점)	- 운영수입보장 요구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 - 운영수입보장 요구금액을 가장 적게 제시한 사업신청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율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

※ 세부 평가항목 및 요소는 예시 내용임



### III. BTL 민간투자사업



기존 초등학교의 BTL 복합화사업시설 그림도(예시)

## 1. 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요

BTL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입니다.



- 2005년 추진현황
  - 17개 사업분야(128개 사업) 6.2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
  - 2005년말 86개 사업(3.8 조원) 고시 완료
  -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사가 활발히 참여(경쟁율 3:1)
- 2006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억원)

대상시설	총사업비(추정)	비고
국가사업	26,002	군인아파트, 기능대학, 철도 등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28,218	하수관거, 복합시설 등
예비사업 한도액	2,711	
합계	56,931	

- 2006년도 지자체 자체사업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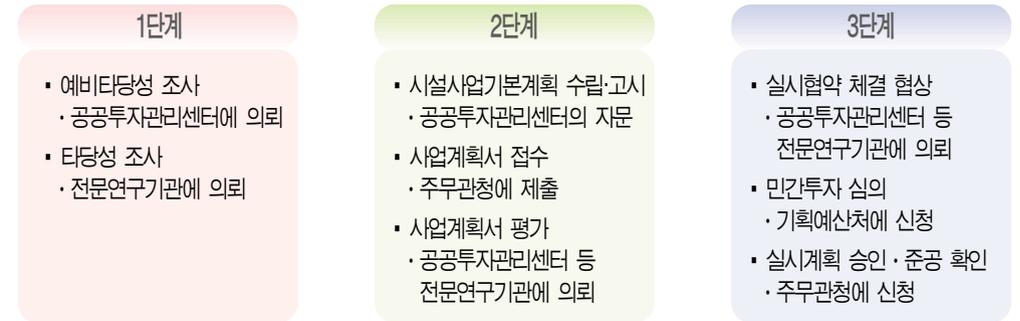
대상시설	총사업비(추정)	비고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10,989	10개 시도 교육청
초중등학교 신축	15,227	16개 시도 교육청
합계	26,216	

## 2. BTL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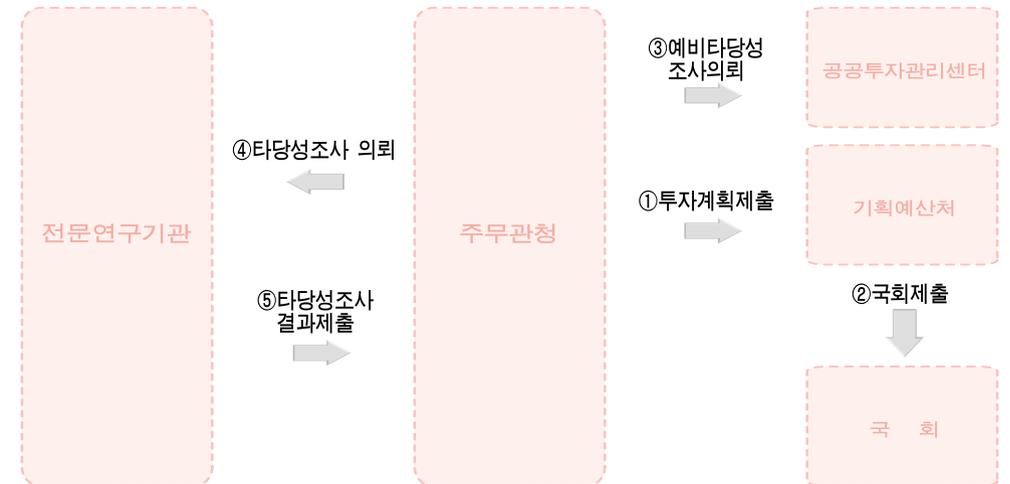
- BTL사업 투자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요 3단계 10개 Step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1단계는 투자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단계, 2단계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평가, 마지막 3단계는 협상 및 공사시행 단계입니다.



■ 추진단계별로 아래의 절차·기관을 거쳐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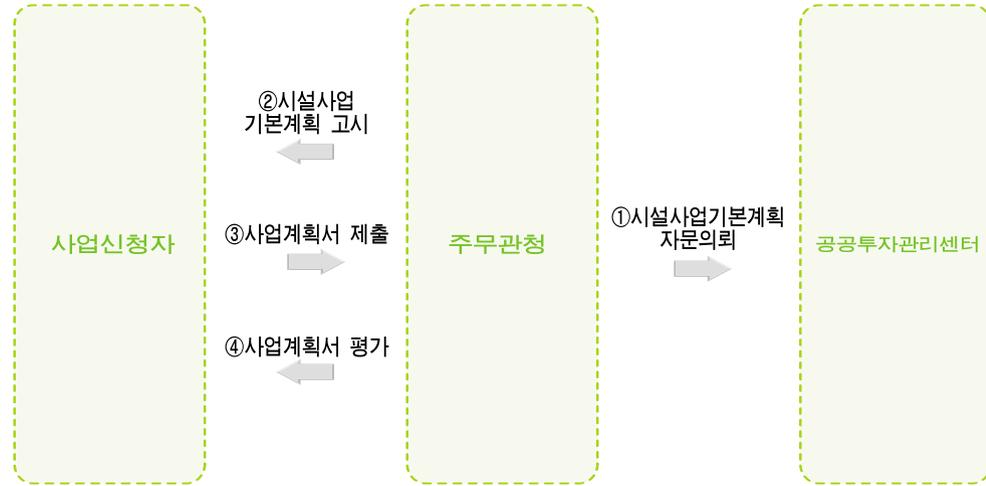


■ 1단계는 『투자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조사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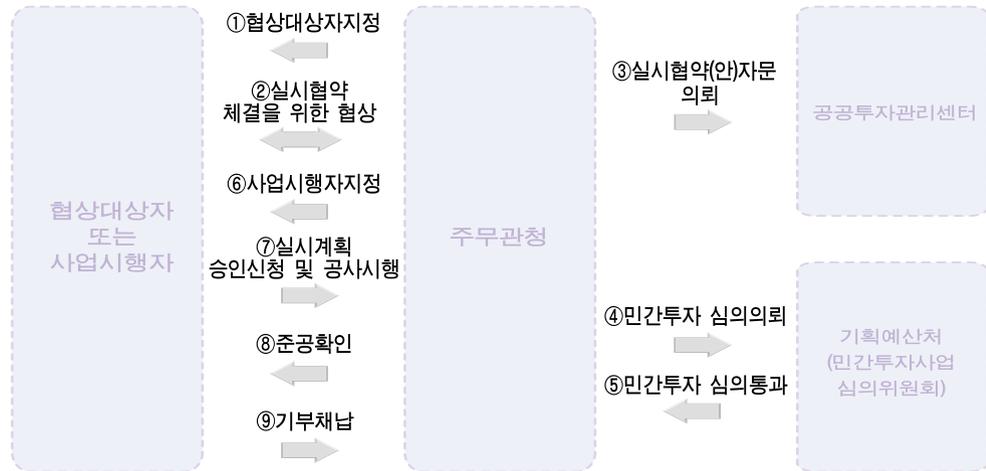
- ※ 주무관청이 투자계획 수립 및 단위 사업 선정(단위시설 적정화 및 복합화)
- ① 정부차원 투자계획 종합 및 조정/총한도액 국회 제출(지자체 주무관청 사업은 지방의회 제출)
  - ③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시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고 국고보조 300억원이상 사업/법정 및 필수설치시설 면제)
  - ④ 주무관청이 타당성조사 수행(사업추진타당성, 적격성조사, 민자사업실행 대안)
    -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 가능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대편익 및 시급성 등을 위주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과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지의 적격성 조사 실시
    - 민자사업 유용성 인정시 총사업비, 수익률, 임대료 등의 사업시행조건을 제시(정부 실행대안)

■ 2단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평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 ① 연관시설 복합화,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식, 평가기준 및 절차 등 명기
- ④ 평가는 1단계(PQ, 사업수행능력) 및 2단계(기술 및 가격요소) 평가

■ 3단계 『협상 및 공사시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됩니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 협상대상자 지정
- ④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사업에 한함
-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1년 이내 승인 신청, 주무관청은 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 승인여부 서면 통지
- ⑧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공 후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에 기재한 서류 첨부 제출

### 3. 주요항목별 평가기준



- 2단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설 계 (130점)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등
시 공 (70점)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계획/부실시공 방지계획/시공민원 방지계획/시공 환경관리계획/주민 및 환경친화적 시공계획
유지관리 (140점)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계획/유지보수 계획/환경친화적 계획/시설안전관리계획
서비스수준 (60점)	서비스 제공, 방법, 실천계획/사용자 욕구충족 계획/사용자 편리성 및 안정성/사용자 만족도계획/환경위생(청소등) 계획/기타 서비스 제공 계획
출자지구성 (60점)	전문운영사/재무적투자자 지역중소업체
사업관리계획 (20점)	건설과 운영계획중 실적이 없는 컨소시엄은 기본점수를 부여
창의성 (20점)	주민편의 등
정부지급금 (500점)	정부지급금 요구 수준

※ 세부평가항목 및 요소는 예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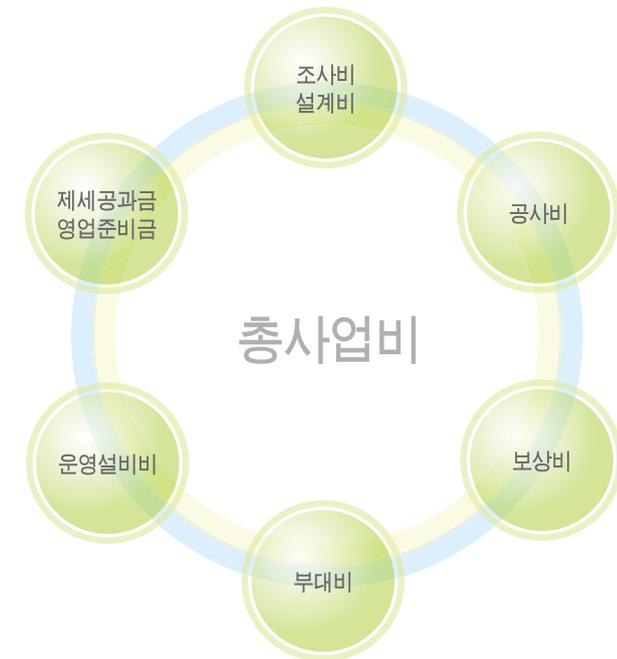
## Ⅳ.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및 정부지원제도

###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 1) 기본개념 : 총사업비, 운영비, 사업비와 투자비

##### (1) 총사업비의 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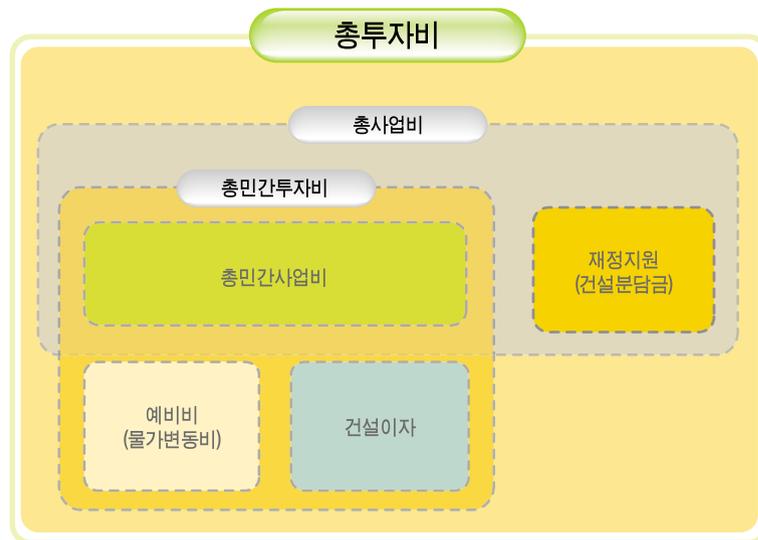


-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변경 불가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 : 주무관청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 설계변경, 관계법령의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 등

(2) 운영비의 산정

-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운영비용으로 산정되지 않음
  - 운영기간 중 금융비용은 사업수익률에서 반영
  - 감가상각비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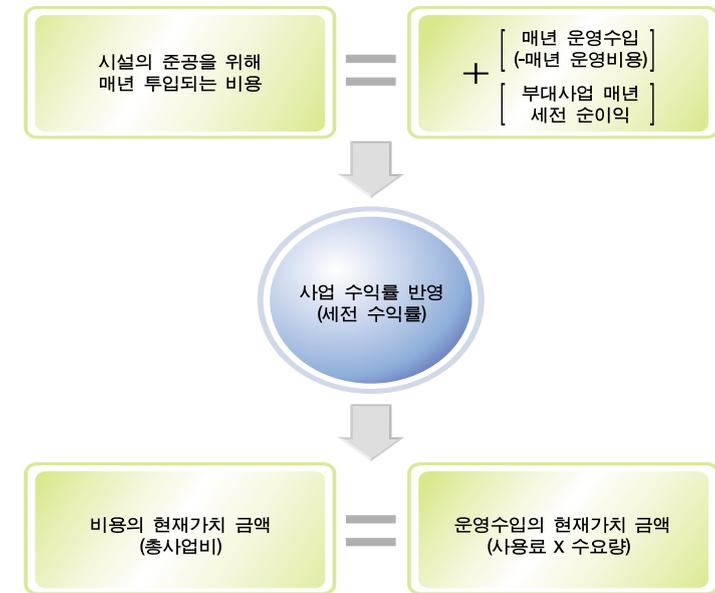
(3) 사업비와 투자비의 차이



- 총사업비, 운영수익 등의 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하되, 협약 체결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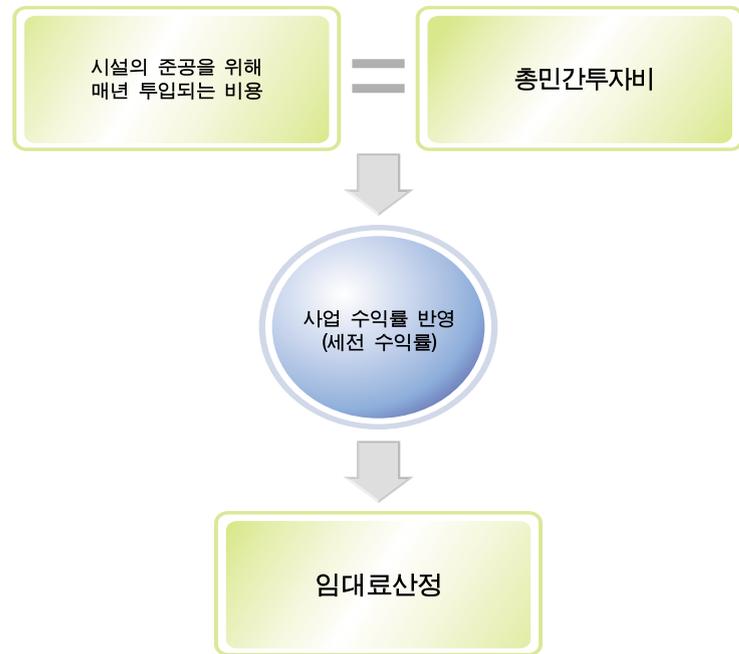
2) 투자모델

(1) BTO 사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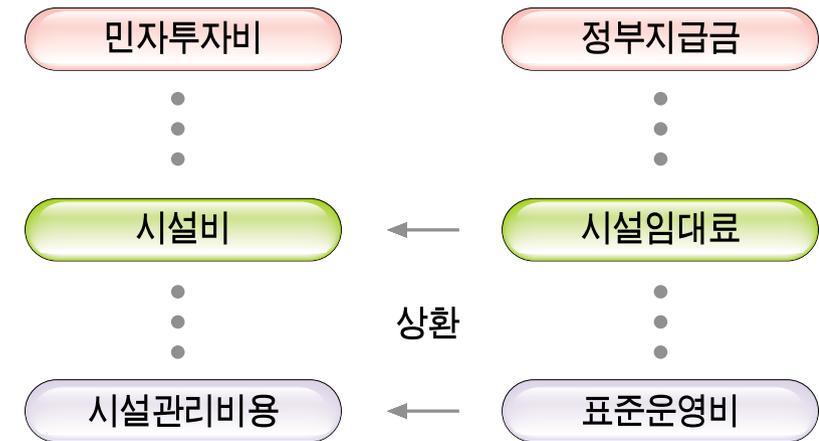
- BTO 사업방식은 민간이 투입한 총사업비를 운영기간 중의 운영수입(사용료 x 수요량)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비용산정
  - 고시 또는 협약체결시점의 가격(총사업비)으로 산정
- 사업수익률
  - 민간이 투자비, 운영수입, 자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
  - 경쟁 등을 거친 후 협상에서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위험보상률, 국내의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 불허
  - 예외적으로 재정지원 규모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업수익률 조정 가능
- 사용료 산정
  - 비용 산정시 결정된 기준사용료에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조정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 수요량
  - 수요량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수요추정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요금에 따른 적정 수요량 반영

(2) BTL 사업방식



- BTL 사업방식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료로 하여 임대기간 중에 매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text{시설임대료} + \text{운영비} = \text{정부지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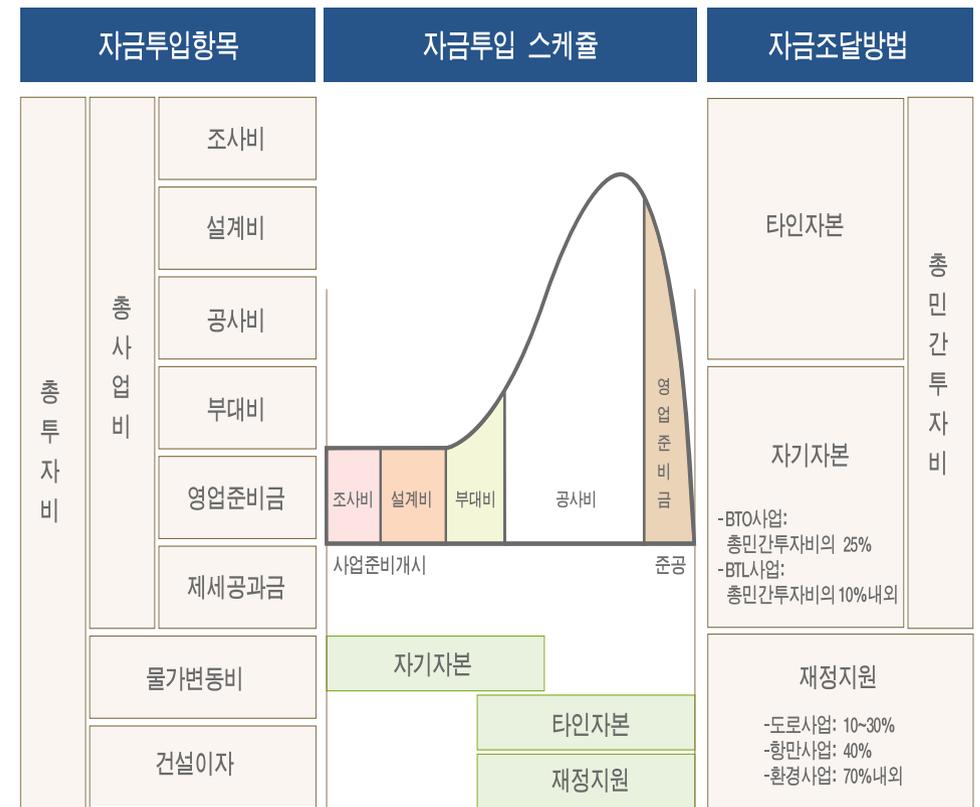
- 비용산정
  - 총민간사업비 + 물가변동분 + 건설이자 = 총민간투자비로 산정
  - 철도시설 등 장기간 사업은 BTO 사업방식에 의함
- 사업수익률
  - 지표금리(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가산률(장기투자, 건설 운영 등의 프리미엄)로 하여 사업별로 자율적으로 제시
  - 경쟁 등을 거친 후 협상에서 최종 결정
  - 지표금리는 5년 마다 조정, 가산률은 조정 불가
- 임대료 산정

$$\text{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운영비
  - 실시협약에서 일정시점의 불변가격으로 사전 확정
  - 운영비 지급시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지수)을 반영
- 운영기간 중 민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협약에서 정한 성과요구수준에 미달시 정부지급금의 일정비율 차감(페널티 적용)
  - 성과요구수준을 회복시 차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원하여 지급(인센티브 적용)
  - 운영 중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불이행이 반복 되거나 서비스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성과점검(Monitoring)
  -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이용자의 만족도조사, 유용성 체크리스트 점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고객만족도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세 개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정하여야 하는데 각각 평가자나 평가목적에 따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음
- 본시설의 일부로서 본시설 전체의 기능발휘에 기여하고자 부속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순익을 정부가 지급할 시설임대료에서 차감합니다.
  - 부속시설은 본시설의 일부로서 본시설 전체의 기능발휘에 기여
  - 사업자 책임하에 부속시설을 운영
  - 부속시설의 투자비는 본시설 총투자비에 포함되나, 운영비는 불포함
  - 실제 운영순익이 협약상의 추정 운영순익보다 초과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배분 가능

### 3) 자금조달 방법

- 건설보조금  
총사업비중 일부는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비를 경감시켜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보조금의 비율은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25~50% 수준입니다.
- 총민간투자비(자기자금 + 차입금)  
총투자비 중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자기자금(자기자본)과 차입금(타인자본)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 4) 자금재조달 방법

-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본구조 변경 또는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출자자 기대수익이 증가한 경우에 자금재조달시 발생하는 정부의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 자금재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재무모델(자금재조달 반영전의 재무모델) 대비 비교 재무모델(자금재조달 반영후의 재무모델)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기분으로 측정합니다.
- 자금재조달시 정부와 사업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비율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50%, 사업시행자 50%입니다.
-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며 기타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보장 축소, 무상사용기간 단축 등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부대사업 방법

-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를 보전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BTL 사업 추진을 위해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시설도 부대사업으로 가능

## 2.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원방식

정부는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을 인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보조, 세제혜택, 규제완화, 해지시지급금 보장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재정지원

#### (1) 사업비 보조

- 주무관청은 국가의 중장기투자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은 귀속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보상비·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요금수준(계산사용료)'과 '적정사용료'를 산출하여, 계산사용료가 적정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상비, 건설비등  
정부보조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BTL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시설별 건설비에 대해 10%p 가산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합니다.

(2) 운영수입 보장

- 민자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위험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자유치를 위해 이러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는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는 제도이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구 분	98 ~ 03.4.	03.5 ~ 05년말	'06년 개선안
보장기간	20~30년	15년	10년
보장수준	추정 운영수입의 80~90%	초기 5년 80~90%, 5년 경과시 10%p씩 축소	민간제안사업은 폐지 정부고시사업은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보장요건	(신설)	50% 미만시 배제	50% 미만시 배제

\* IMF직후 도입 → '03.5월 보장수준 1차 축소→시장여건에 따라 단계별 축소 계획

- 외국의 경우에도 최소수입보장제도(철레), shadow toll 제도(영국)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민자 사업자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해지시지급금 보장

- 사업중단시 협약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선순위 채무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협약 해지시지급금이란 정부 귀속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운영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의 매수청구 요청에 따라 정부가 해당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합니다.
- 협약 해지시지급금의 인정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 및 운영이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경우
  - 실시협약시 정한 정부이행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협약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은 잔여 사용기간 또는 운영기간 동안의 기대수익의 현재액을 상한으로 상호협의를 결정합니다.

2) 세제·금융지원

(1) 세제지원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투자하는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하며, 15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합니다.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 인정,  
손금처리

-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사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면제

귀속시설에 대해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규제 완화

- 민간투자사업에 다양한 투자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최저설립자본금 등의 특례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이 SPC에 최대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15%이상 출자 제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5%이상  
출자제한 면제

특례조항을 만들어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 3) 인프라 펀드 설립 지원

- 인프라펀드는 다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회사입니다.
- 펀드의 자산운용범위와 자금조달상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투자한도 배제, 차입금허용(자본금의 30%)
  - 최저설립자본금 : 100억원, 최저유지자본금 : 50억원
- 투자자금의 환금성 확보를 위해 펀드의 주식상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인프라펀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더라도 의무이행사항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배제

### 4) 산업기반신용보증

- 설립목적: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대상: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보증한도: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음
- 보증상품

종 류	보 증 내 용
시설자금보증	사업시행자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정부 재정지원 지연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운영자금 부족에 대비, 한도를 설정하여 보증지원
자금재조달 (Refinancing)보증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신규 대출 또는 SOC채권으로 대환하기 위한 자금재조달에 대해 보증지원
운영수입보증	운영수입 보장수준 축소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운영자금 부족에 대비, 한도를 설정하여 보증지원
사회기반시설 채권보증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보증

- 보증료: 0.2% ~ 1.3%까지 사업위험도와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운용

### 5) 주요기관 연락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	02-3480-7886
	민자사업관리팀	02-3480-7841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과	02-2110-2323
건설교통부	철도국 일반철도과	02-504-0484
	항공기획관 공항개발팀 인천국제공항 관련 BTO사업	02-2110-8260~2
	기반시설본부 민자사업팀 도로·철도 BTO사업	02-2110-8383
	철도건설팀 일반철도 BTL사업	02-2110-8359~60
	생활교통본부 광역도로팀 광역도로 BTO사업	02-2110-8320~1
	광역철도팀 광역철도 BTO·BTL사업	02-2110-8322~3
	도시철도팀 도시철도 BTO·BTL사업	02-2110-8160~3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02-3674-6741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와 BTL사업팀	02-2110-697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심의관 시설기획담당관	02-2100-6200
국방부	계획예산관 건설관리과	02-748-5821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훈련정책과	02-503-9754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02-3704-9412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보건복지시설확충팀	02-504-3228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BTO팀	02-958-4707
	BTL팀	02-958-4704
신용보증기금	SOC 보증부	02-710-4403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	031-380-0114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	031-910-31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항만연구센터	02-2105-27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02-3475-6900